

임직원행동강령

제정 2006.5.29. 강령 제1호
개정 2009.1.29. 강령 제2호
개정 2010.9.6. 강령 제3호
개정 2014.12.31. 강령 제4호
개정 2015.10.20. 강령 제5호
개정 2017.9.18. 강령 제6호
개정 2018.4.5. 강령 제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9.>
 - 가.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1.29.>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1.29.>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1.29.>
 -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1.29.>
 -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1.29.>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1.29.>
 - 사. 그 밖에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1.29.>
2. “직무관련 임직원”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9.>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09.1.29.>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개정 2009.1.29.>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개정 2009.1.29.>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09.1.29., 2017.9.18.>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9.>
5. 삭제 <2009.1.29.>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1.29., 2017.09.18.>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7.09.18.>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7.09.18.>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7.09.18.>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09.18.>

⑥ 삭제 <2009.1.29.>

제5조(직무관련자가 되면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① 이사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 사람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9., 2014.12.31.>

1. 1,000만원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 <개정 2009.1.29., 2014.12.31., 2017.09.18.>

2.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개정 2009.1.29., 2014.12.31.>

3.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 으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 <개정 2009.1.29., 2014.12.31.>

4.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09.1.29., 2014.12.31.>

5. 최근 5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9.18.>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8.>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7.9.18.>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7.9.18.>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에게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계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개정 2009.1.29.>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② 삭제 <2009.1.29.>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1.29.]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2017.9.18.>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2010.9.6.>

②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신설 2010.9.6.>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9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9.18.>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삭제 <2017.9.18.>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삭제 <2017.9.18.>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칙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17.9.18.>

제2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7.9.18.>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1.29.>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개정 2009.1.29.>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개정 2009.1.29.>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신설 2009.1.29.>

③ 삭제 <2017.9.18.>

제21조의2(부당한 정치개입) ①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조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치개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임직원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9.6.]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개정 2009.1.29.>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사람이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7.9.18.>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이사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7.9.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9.1.29.>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9.>

제25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이사장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에 위반 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삭제 <2017.9.18.>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7.9.1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7.9.18.>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 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개정 2009.1.29.>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개정 2009.1.29.>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사람,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제6장 보칙

제27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③ 이사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 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18.4.6.>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임직원 행동강령」을 총괄·관리 운영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담당부서본부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9.>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9.>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9.>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9.>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9.>

④ 삭제 <2009.1.29.>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금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7.9.18.>

제28조의2(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8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9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30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제31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양정기준) 이사장이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9.18.>

부 칙 <제1호, 2006.5.2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호, 2009.1.29.>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호, 2010.9.6.>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호, 2014.12.31.>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호, 2015.10.20.>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호, 2017.9.18.>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호, 2018.4.5.>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명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 소명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소명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4.5.>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활 동 유 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input type="checkbox"/>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요 청 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사유				
주 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_____만원 (※ 1회 평균대가 _____만원) (교통비 _____만원, 원고료 _____만원, 재료비 _____만원 포함)			
20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7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주 소		
신 고 사 항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신고자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물품)			
	수량(금액)			
	받은 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 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소 속		청구인과의 관 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청 구 인 (서명) </div>				

【별지 제10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3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4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5호서식】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 00년 상반기, 기 관 명)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06.30./ 하반기 : 12.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개정 ()	일 자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 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③ 특혜의 배제			
④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⑥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⑦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⑧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⑨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⑪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⑫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⑭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⑮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⑯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⑱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⑲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⑳ 투명한 회계 관리			
㉑ 기타			

나.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회의 등 시간(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명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금지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 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 에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 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frac{A}{A+B} \times 100$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					
3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구분	점검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					
3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
소속				직위	
직급	<input type="checkbox"/> 임원	<input type="checkbox"/>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년 ()월	적발일	()년 ()월	징계 등 처분일	<input type="checkbox"/> ()년 ()월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4. 적발기관	자체적발	<input type="checkbox"/> 내부공익신고 <input type="checkbox"/> 진정/신고 <input type="checkbox"/> 자체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기재)			
	외부기관 적발	<input type="checkbox"/> 상급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input type="checkbox"/> 검찰청 <input type="checkbox"/> 경찰청 <input type="checkbox"/> 국무총리실 <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기재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input type="checkbox"/>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input type="checkbox"/>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특혜의 배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input type="checkbox"/>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input type="checkbox"/>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input type="checkbox"/> 인사 청탁 등의 금지 <input type="checkbox"/>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input type="checkbox"/> 이권개입 등의 금지 <input type="checkbox"/>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input type="checkbox"/>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input type="checkbox"/> 알선·청탁 등의 금지 <input type="checkbox"/>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input type="checkbox"/> 투명한 회계 관리				
내역	○ 6차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3. 위반행위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파면	<input type="checkbox"/> 해임	<input type="checkbox"/> 정직	<input type="checkbox"/> 감봉	
	<input type="checkbox"/> 견책	<input type="checkbox"/> 불문경고	<input type="checkbox"/> 경고·주의	<input type="checkbox"/>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별지 제16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확인자 (직위)		(서명)

【별표 1】 <신설 2017.9.18.> <개정 2018.4.6.>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제3항제2호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10만원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	5만원

※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7.9.18.>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9조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사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 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를 권익위원회 표준안을 준용하여 신설한다.

- 신설하는 별지 : 금품 등 수수신고서, 초과사례금 신고서,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금품등 인도확인서,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2조와 관련)

비위유형 \ 수수행위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수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파면
	능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파면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	파면	파면